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1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이인영 · 이기현 · 이정문
김영환 · 전진숙 · 소병훈
문진석 · 강준현 · 채현일
김성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인금융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에 따른 변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는 법률관계의 확정과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채권의 소멸을 존중함으로써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반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및 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개인채무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정보비대칭 구조에 놓여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3조까지 및”을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3조의4의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

제2장에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의 관리)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의4제1항의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라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확인방법 제공 등)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3조의4제1항의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 또는 완성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임원·직원
이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
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
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사
항
6.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
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또는 완성 관련 정보의 확인방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 ② (생략)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u>제13조까지</u>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제13조</u> <u>까지, 제13조의2 및</u> ----- -----.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u><신 설></u> 5. (생략) ② (생략) <u><신 설></u>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13조의4의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의 관리)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u>

<신 설>

<신 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금융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의4제1항의 소
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라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확인방법 제공 등) 채권금융회
사등은 제13조의4제1항의 소멸
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른 개인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정
지 또는 완성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임원
· 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소멸
시효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
다.

②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사항

6.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 등이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u>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u>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또는 완성 관련 정보의 확인방법</u> 6. (현행과 같음)
---	--